

#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(김춘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5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김춘례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은주, 박순규, 노승재,  
김종무, 김혜련, 유정희,  
이광성, 송정빈, 노식래,  
안광석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현행 회의규칙 제49조은 회의록을 시디롬으로 제작해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, 이미 시의회 홈페이지 내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제공하고 있어 시디롬 배부사업의 실효성이 사라졌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능률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함(안 제49조제1항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항 본문 중 “회의록 시디롬은”을 “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9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</p> <p>① <u>회의록 시디롬은</u>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다만,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49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</p> <p>① <u>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</u>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